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0 선고 2017가단6414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C

피 고 D

소송대리인 E, 법무법인 위드유(담당변호사 김홍섭)

변론 종결 2019. 8. 29

판결 선고 2019. 10. 10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F 잡종지 153㎡(이하'원고들 토지') 중 별지 도면 표시 ㉔ 부분

1㎡시멘트 포장,㉔ 부분 4㎡ 철근콘크리트조 건물,㉕ 부분 6㎡ 철근콘크리트 계단을 철거한 후 인도하고, 2017. 8. 5.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33만 원을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- ① 원고들의 부친이자 이 사건 원고들 소송대리인인 C은 1973. 12. 3. '원고들 토지'의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해 오다가 2017. 6. 12.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. 6. 21. 원고들에게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, 그 직후인 2017. 7. 21. 원고들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- ② 소외 G은 '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H 대 17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)를 1976. 6. 14.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2. 12. 14.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,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(이하'이 사건 건물')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,피고는 2000. 9. 4.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③ 한편, 이 사건 공동피고 I은 1989. 6. 1. '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J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0. 12. 6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- ④ 그런데 위 G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시멘트 포장과 계단 일부 및 이 사건 건물 일부가 '원고들 토지'를침범하고 있었고(이하 침범 면적을 '이 사건 점유부분'이라 한다),위 I 소유의 J 지상건물 일부도 '원고들 토지'를 침범하고 있다.1) ⑤ 한편, 위 C은 '원고들 토지'의 소유권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기 전인 2016.10.경 '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인 소외 K 등 4명을 상대로 자신이 원고가 되어 이 법원 2016가단119920건물등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,위 K 등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었고,위 C은 2017. 6. 1. 위 소를 취하하였다.

[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6호증,을가 제1내지 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포함),감정인 L의 감정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은, 무단 점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,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.

나.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·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해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(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판결, 1992.5. 26. 선고 92다2844, 2851, 2868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(172㎡)이나 '원고들 토지' 면적(151㎡)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점유부분 면적(총 11㎡)이 상당한 정도가 된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가, 피고뿐만 아니라 '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이 사건 공동피고 I도 소유권 취득 당시 그 일부 근소한 면적이 '원고들 토지' 경계를 넘었던 점, '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 다른 주변 토지들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C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, 피고는 위 C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위 C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년경에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.

다.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,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,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,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6143판결,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6522판결,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다4210판결 등 참조), 앞서 본 대로 위 C은 '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인 K 등을 상대로 경계침범 부분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K 등이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하는 등 다투었고 그러자 2017. 6. 1.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, 그 직후인 2017.

6.12. '원고들 토지'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들인 이 사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

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17. 7. 21.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같이 *원고들 토지'에 인접한토지 소유자들의 취득시효 항변을 차단하고자 원고들을 내세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경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,따라서 원고들로 하여금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영훈

1)공동피고 I에 대하여는 별지 도면 표시 ㉔ 부분 7매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였는데,15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 정되었다.